「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 무 보 증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9 . 9 평창군수(농업경영과장)
나. 회부일자 : 1999. 10. .
다. 상정일자 : 1999.10.18. 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 안 이 유

○ '92년 재산영농조합의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채무보증한 20억과 관련하여, '99년도 상환대상액 229,565천원중 100,000천원을 상환하고 잔액 129,565천원에 대하여는 경영부진등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하자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평창군수가 채무보증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자금」.129,565천원에 대하여 하여 평창군수를 채무보증토록 하여 대출하고 군수가 채무 보증한 20억중 '99년도 미상환금인 129,565천원을 상환하기 위함.

4. 검 토 의 견

■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 성장작목시범단지 투자사업비는 총50억으로서 이중 국비가21억 도비 4억5천, 군비 4억5천, 융자 20억이며, 이외 농림사업으로 총11억 6천4백만원이 간이집하장, 농산물포장센터, 공동퇴비 제조장, 교육장 각1동에 투자(국비 3억7천, 도비 2억3천, 군비 1억1천, 융자 1억4천, 자부담 3억)되었고.

시범단지 조성사업50억중 융자액 20억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92.6.29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7.14일 채무보증 하였음.

■ **채무보증한 20억에 대한 상환과 잔액을 살펴보면**

○ 연리 5%,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으로서 3년거치액 2억 5천 만원과 96년도부터 상환한 원금과 이자 8억을 합한 총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고 상환잔액은 10억6천만원임.

■ **채무보증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나,

○ '97년도 IMF 구제금융에 따른 유가상승, 소비둔화, 원가상승 자연재해, 농림사업을 이용한 과다한 추가투자 등으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되자 융자금 상환능력 악화로 인하여 정부의 농가부채 해소자금 의존

■ **20억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해지는**

○ 시설완료후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 및 농가부동산을 담보로 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해지는 채무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군수와 농협간의 별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등 해지근거가 없어 농협의 이해가 없을시 채무보증 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임.

○ 농협 이사회는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 농가부동산 평가액은 30억으로 상환잔액에 상응한다고 보나 경영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시에는 부가가치가 떨어져 담보물로 적당치 않고

제3자 인수 및 부동산 경매시 매수인이 없어 경매에서 잦은 유찰시는 경매금액이 낮아지는등 채권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며

당해 시설물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중단시 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저온저장고 및 농가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후치담보로 하고 확실한 보증인인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종합검토결과

○ 채무보증은 정부의 「농가부책 및 경영안정대책」에 대한 대출건이며 본 자금을 대출받아 성장작목시범단지 '99년도 미상환액을 상환하기 위한 돌려메우기에 사용되는 자금임.

○ 평창군은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99년도 상환액 129,565천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2년동안 연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음.

○ 과연 금번에 신청한 채무보증건에 대하여 조합자체에서 농가부동산으로 대출할 방안과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군에만 의존해야 하는지의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자구적 노력이 의심되고,

○ 향후 채무보증해지와 앞으로 상환불가시 계속적인 채무 보증을 할 것인지의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 본건에 대하여는 채무보증 불가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향후 평창군과 법인 상환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함.